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37

제 출 연 월 일 : 2016년 10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교 육 감

1. 제안이유

가. 2016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감소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정원 감축

나.「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조 및「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에 포함하여 규정

다.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비서 · 비서관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의「지방공무원법」(2013.12.12. 시행) 개정 내용 반영
- 교육감 비서실 공무원 중 비서 · 비서관 역할을 하는 일부 공무원의 정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책정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감축(안 제2조): 감 69명
1) 일반직 정원 감축: 감 71명 (6,783명 → 6,712명)
2) 별정직 정원 책정: 증 2명 (0명 → 2명)

나.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신설(안 제3조 관련 별표 2)
1) 5급상당 (50% 이내), 6급상당 (50% 이상)

다. 연구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 「지방공무원법」
3)「지방공무원 임용령」,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라. 기타
1)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1]
2) 입법예고(2016.10.12. ~ 10.23.)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248”을 “7,179”로, 같은 조 제2호 중 “6,783”을 “6,714”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을 삭제한다.
제5조 중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을 삭제하고, “규칙”을 “교육규칙”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 문 경력관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비 율	2% 이내	8% 이내	30% 이내	36% 이내	23.5% 이상	0.2% 이내	0.03% 이내	0.27% 이상

2. 기능직공무원: 삭제

3. 연구직공무원: 삭제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비 율	50% 이내	50% 이상

5. 특정직공무원

구 분	장학관 · 교육연구관	장학사 · 교육연구사
비 율	30% 이내	70% 이상

[별표 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7,179**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6,716**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37		26	11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6,636				
전문경력관 소계	9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특정직 계	**460**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0		28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410				

【별첨 1】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24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5명
2. 본청 · 교육지원청 ·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6,783명
3. 교육전문직원 정원 460명</td><td>제2조(정원의 총수) ----------7,179명----------.
1. (현행과 같음)
2. ---------- 6,714명
3. (현행과 같음)</td></tr>
<tr><td>제4조(직급별 정원)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td><td>제4조(직급별 정원) ----------(삭제) ----------.</td></tr>
<tr><td>제5조(직렬별 정원)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td><td>제5조(직렬별 정원) ----------(삭제)-----교육규칙----------.</td></tr>
<tr><td>[별표2] (생 략)
1. 일반직공무원
<table><tr><th>구분</th><th>4급 이상</th><th>5급</th><th>6급</th><th>7급</th><th>8급·9급</th><th>전문경력관</th></tr><tr><td>비율</td><td>2% 이내</td><td>8% 이내</td><td>30% 이내</td><td>36% 이내</td><td>23.5% 이상</td><td>0.5% 이내</td></tr></table>3. 연구직공무원
<table><tr><th>구 분</th><th>연구관</th><th>연구사</th></tr><tr><td>비 율</td><td>10% 이내</td><td>90% 이상</td></tr></table>＜신 설＞
4. 특정직공무원 (생 략)
[별표3] (생 략)</td><td>[별표2] (현행과 같음)
1. 일반직공무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4급 이상</th><th rowspan="2">5급</th><th rowspan="2">6급</th><th rowspan="2">7급</th><th rowspan="2">8급·9급</th><th rowspan="2">전문경력관</th><th colspan="2">연구직</th></tr><tr><th>연구관</th><th>연구사</th></tr><tr><td>비율</td><td>2% 이내</td><td>8% 이내</td><td>30% 이내</td><td>36% 이내</td><td>23.5% 이상</td><td>0.2% 이내</td><td>0.03% 이내</td><td>0.27% 이상</td></tr></table>3. 연구직공무원 : 삭제
4. 별정직공무원
<table><tr><th>구 분</th><th>5급상당</th><th>6급상당</th></tr><tr><td>비 율</td><td>50% 이내</td><td>50% 이상</td></tr></table>
5. 특정직공무원 (현행과 같음)
[별표3] (현행과 같음)</td></tr>
</table>

현 행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7,248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6,773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37		26	11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6,707				
전문경력관 소계	9				
연구직 계	14				
연구사	14				
특정직 계	460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0		28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410				

<비고>

1.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전환 임용을 위하여 일반직 178명(5급 이하)을 증원하고 기능직 178명을 감축한다.
2.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일반직 2,765명(5급 이하 2,756명, 전문경력관 9명)과 연구직 2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14명과 기능직 2,753명을 감축한다.
3.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원에 따라 일반직 21명(5급 이하)과 특정직 1명(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을 증원한다.

개 정 안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7,179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6,716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37		26	11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6,636				
전문경력관 소계	9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특정직 계	460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0		28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410				

<삭제>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2016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감소로 인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일반직공무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주무관 정광채(02-399-9357)

【별첨 3】

관계법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개정 2010.6.8., 2011.5.23., 2012.12.11.>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5.5.18.>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지도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

③ 삭제 <2010.6.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0.>

③ 삭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 · 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 · 확인 결과를 기관별 · 기구별 · 종류별 · 직렬별 · 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8.>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 · 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16조(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별정직 정원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각 직무분야별 · 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별정직 4급 상당 이상의 정원을 책정(4급 상당 이상의 계급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별정직 정원책정사유 및 임용자격기준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 · 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5.8., 2014.6.11.>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 · 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 · 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 ·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8., 2013.12.4.>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8.>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 ·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